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군검찰사무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자정부법」의 취지에 따라 군검찰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산화하여 군사경찰, 군사법원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법령상 근거와 위 업무 수행 시 개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군사법정보시스템의 도입(안 제38조)

군형사사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군 사법기관별 정보체계를 통합하여 수기형식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군외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군검찰이 위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산화하고, 군사경찰, 군사법원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나.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39조)

군검찰 및 안 제38조에 따라 위 시스템을 운영·관리 또는 위탁받은

자가 군사법정보시스템과 군형사사법포털(군사법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을 활용한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① 군검사 및 군검찰단 소속 직원은 형사사법업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군사법정보시스템(법에 따라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해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군검사 및 군검찰단 소속 직원은 형사사법정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형사사법포털(군사법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③ 제1항의 군사법정보시스템과 제2항의 군형사사법포털은 국방부에 운영기구를 두어 운영·관리한다.

④ 제3항의 운영기구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지원업무의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 또는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운영기구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군검사 및 군검찰단 소속 직원(제38조제3항에 따라 군사법정보시스템과 군형사사법포털을 운영·관리하는 자와 제5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제38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사무
2. 군사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
3. 형사사법정보 공동 활용에 관한 사무
4. 제38조에 따른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5. 군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8조(군형사사법절차 전자화)</u> <u>① 군검사 및 군검찰단 소속 직원은 형사사법업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군사법정보시스템(법에 따라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해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u> <u>② 군검사 및 군검찰단 소속 직원은 형사사법정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형사사법포털(군사법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u>

<신 설>

여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③ 제1항의 군사법정보시스템과 제2항의 군형사사법포털은 국방부에 운영기구를 두어 운영·관리한다.

④ 제3항의 운영기구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지원업무의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 또는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운영기구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군검사와 군검찰단 소속 직원(제38조제3항에 따라 군사법정보시스템과 군형사사법포털을 운영·관리하는 자와 제5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제38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다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사무
2. 군사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
3. 형사사법정보 공동 활용에 관한 사무
4. 제38조에 따른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5. 군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	
연 락 처	(02) 748 - 1658